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25 선고 2021가단51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고B

변론 종결2021. 7. 14.

판결 선고2021. 8. 25.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7.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대여금 양수채권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7. 3. 8. C에게 300만 원을 대출기간 15개월, 금리 13%, 연체이자율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D은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4. 6. 양수인 겸 채권양도통지 발신인의 지위에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2018. 2. 28. 기준 채무원금 300만 원 및 연체이자 466,926원의 합계 3,466,926원)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53283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8. 'C은 원고에게 3,703,120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7. 17. 확정되었다.

2) 신용카드대금 양수채권 가) C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이하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을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C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는 2017. 12. 6. D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E는 2017. 12. 11.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2017. 12. 6. 기준 원금 7,620,463원 및 수수료/이자/법적비용 등 1,257,424원의 합계 8,877,887원)이 D에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나) D은 201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7. 16. 양수인 겸 채권양도통지 발신인의 지위에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2018. 5. 31. 기준 채무원금 7,620,463원 및 연체이자 3,184,729원의 합계 10,805,192원)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0855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31. 'C은 원고에게 11,526,421원 및 그 중 7,620,463원에 대한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11. 20.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아버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G, H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C의 법적상속분은 1/4 지분이었다. C은 2019. 7. 29. 피고와, C이 상속받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 전부를 피고가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2019. 8.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 당시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지2] C의 채무금표 기재와 같이 총 310,93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1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기재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C이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재산처분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전 C이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은 피고와 그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 1/4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13. C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가 대물변제의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 당시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이가 대물변제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분할협이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위 제2의 나. 2)항의 주장을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택하여 보더라도,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위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대물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C의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게 되었던 점 및 그 외 C과 피고 사이의 친밀한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인민

별지